국회의원(박범계) 징계안

의 안 번 호	3999

요구연월일 : 2024. 9. 12.

요 구 자 : 배준영・성일종・한기호
강대식・정희용・신동욱
박준태・조지연・강명구
김상욱・김소희・김재섭
김종양・박성훈・박수민
서지영・우재준・이종욱
임종득・유용원 의원
(20인)

주 문

국회의원(박범계)을 「국회법」 제155조제9호 및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법」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는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55조(징계)에 따르면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와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나.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질의하는 도중 강선영 의원에게 '또라이'라며 욕설과 모욕을 하였음.

다. 그럼에도 박범계 의원은 욕설과 모욕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음. 심지어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024년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선영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태도, 정책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를 정치적 공세를 위한 공간으로 악용했다. 이에 우리는 강선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며 모욕을 당한 강선영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하였음.

라. 인사청문회 당시 강선영 의원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자유를 뗀 민주주의가 침투되지 않도록, 장병들의 사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달라”라고 촉구한 것이며,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질의임. 박범계 의원이 강선영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했으나, ‘또라이’라는 욕설과 모욕으로 대응한 것임.

마. 이에 국회의원 박범계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9호와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